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자 율 관 리 어 업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052호, 2020.2.18. 제정, 2021.2.19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에 관한 절차를 정함(안 제4조)
- 나.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개발·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5조)
- 다.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라.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마.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바. 자율관리어업 유공자를 시·도, 시·군·구,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9조)

사.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효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- 라. 기 타 : 1) 규제영향분석서, 별첨
- 2) 입법예고 전

대통령령 제 호

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율관리어업 주요 활동과 범위) ① 「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장환경 등 관리 활동 : 수산동식물의 산란·서식장 보호 및 보전을 위한 투석·해중림·해조장 등 어장환경 개선,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, 유해생물구제, 폐어구·어장내 폐기물 등 수거, 어장 또는 해안가 청소 등의 활동
2. 수산자원 보전 활동 :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한 어구수 축소, 그물코 크기 확대, 포획·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강화, 어장휴식, 총허용어획량 등 생산시기 및 생산량 조절, 특정어구어법 사용 제한, 수산종자 방류 등의 활동
3. 경영개선 : 비용절감, 수급조절 등을 통한 공동생산·공동판매, 지역특산물 브랜드화, 판매망 구축,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소득증대 등의 활동

4. 질서유지 :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장감시, 수산물관계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 참여, 지역간·어업간·공동체간 분쟁 해결 등의 활동

② 자율관리어업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선·연안·근해 어장
2. 다수 어선이 일정수면에서 공동으로 어획하고 있는 특정어종
3. 일정지역에 근거를 두고 유사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특정어종

제3조(민간단체의 범위) 법 제2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2.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
3.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
4.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제4조(종합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“공동체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”을 말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

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훈련의 위탁 실시) 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3조에 따른 민간단체(이하 “민간단체”라 한다)에게 개발·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 등)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·도 단위 또는 시·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공동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7조(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결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재정지원을 받은

실적으로 다음 각 호의 등급을 결정한다.

1. 1등급 : 선진공동체
2. 2등급 : 자립공동체
3. 3등급 : 모범공동체
4. 4등급 : 협동공동체
5. 5등급 : 참여공동체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결과를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공동체 지원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·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 받아 우수공동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체에 대하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,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공동체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자율관리어업 유공자 포상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 및 자치구, 민간단체 및

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자율관리어업 정책 효과분석)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,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2. 법 제7조에 따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교육훈련
3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등
4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

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- 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가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14조 제1항제1호	120만원	
나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법 제14조 제1항제2호	1회 위반	2회 위반
		60만원	120만원